

의안번호	2114942
의 퇴 인	유경준 의원
회 답 일	2022. 4. 27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체육시설이용분의 소득공제 추가

【비용추계서】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114942)

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- 체육시설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및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1인당 공제한도 50만원 추가(안 제126조의 2제2항, 제10항)

재정수반요인	추계여부	비고
체육시설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(안 제126조의2제2항)	○	
체육시설사용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8세 미만 직계비속 1인당 공제한도 50만원 추가(안 제126조의2제10항)	X	·체육시설사용분을 지출한 자의 연령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 부재

II. 비용추계 결과

- 재정수입변화: 향후 5년간 총 -438억원, 연평균 -88억원
- 실제 체육시설 사용액 및 실효세율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체육시설사용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(안 제126조의2②)	-82	-85	-88	-91	-94	-438	-88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2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4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체육시설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에 따라, 소득세는 2024년 82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38억원(연평균 8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동일한 총급여구간일 경우 체육시설사용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므로, 개인별 실제 사용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(안 제126조의2②)	-82	-85	-88	-91	-94	-438	-88

II. 재정수반요인
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용분을 추가하고, 공제한도에 18세 미만 직계비속 1인당 연간 50만원의 금액을 더함으로써 소득세수 감소 예상(안 제126조의2제2항, 제10항)
 -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사용분에 대해 30% 소득공제 적용
 - 개정안은 체육시설사용분¹⁾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하고, 현행 100만원인 연간 공제한도를 직계비속의 수에 따라 증가시킴으로써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
 - 체육시설사용분에 대해 18세 미만 직계비속 1인당 연간 50만원을 추가한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금액에 더하도록 규정

1) 개정안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 입장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정의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- 본 비용추계는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
 -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2024년부터 발생하며,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추계
 - 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현행 일몰기한은 2022년 12월 31일이지만, 추계기간동안 동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
- 본 비용추계는 체육시설사용분의 소득공제 대상 추가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
 -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체육시설사용분의 소득공제 추가 및 본 사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18세 미만 직계비속 1인당 연간 50만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그러나 체육시설사용분의 지출규모가 크지 않고²⁾, 체육시설사용분을 지출한 가구원별 연령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18세 미만 직계비속으로 인한 한도 증액은 추계대상에서 제외
 - 또한, 체육시설사용분은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 내에 해당한다고 가정
- 국세통계연보 및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상세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하지만 해당 자료의 부재로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－ 13차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인원수 및 체육활동비 조사 항목을 사용하여 1인당 체육시설사용분 정보를 활용

2) [표 5]에 따르면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 가구 1인당 체육시설사용분 평균 지출액은 40.9만원으로, 직계비속이 없을 때의 한도 100만원보다 훨씬 작음

-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총급여구간별 체육시설사용분을 추정하고, 체육시설사용분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동분을 추계
 - 동일 총급여액 구간에서 1인당 체육시설사용액 및 공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1년(귀속연도 2020년)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,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NABO의 명목소비증가율 전망치를 이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□ 소득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납세자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(추계 대상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사용분이 추가될 경우 이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- (추계 방법)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 적용 인원, 1인당 체육시설사용분과 추가 소득공제액을 먼저 추정한 후, 개정안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·결정세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 세수효과를 산출
 - (적용 인원의 산출)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 인원 중 체육활동비 지출이 있는 자의 비중을 구한 후, 국세통계연보의 총급여구간별 인원 수에 곱해 체육시설사용분 공제 적용대상 인원을 산출
 - 13차 재정패널자료에서 체육시설사용분과 유사한 지출항목은 체육활동비이므로 동비용이 있는 가구 자료를
 - (체육시설이용분 및 소득공제액 추정) 재정패널자료에서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 1인당 체육시설이용분을 먼저 구한 후, 여기에 개정안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액을 구함
 - 개정안은 체육시설이용분에 30%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
 - (세수효과 추계) 추가적인 소득공제액에 현행 실효세율 및 공제 대상인원을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계
 - 실효세율은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 현행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

- 공제 대상인원은 재정패널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로 추정한 인원을 사용함
- 2021년 기준 총 세수효과에 NABO의 연도별 명목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2. 상세 내역

□ (제도 개요)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 25% 초과분의 15~40%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

- 공제대상: 총급여액의 25% 초과 사용액
- 공제율: 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·직불형 카드·선불카드 30%, 도서·신문·공연비·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 40%
- 공제한도*: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 min(300만원, 총급여 20%), (총급여 7천만원 ~ 1.2억원) 250만원, (1.2억원 초과) 200만원
 ※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입장료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 추가
- 2021년에 한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% 이상 증가하는 경우 5% 초과분에 대해 10% 소득공제 추가 적용
 - 현행 공제한도(총급여액 수준별 200~300만원; '20년은 230~330만원) 외에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 적용

[표 2]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개요, 2022년 기준

	제도 개요
공제대상	- 총급여액의 25% 초과 사용액
소득공제율	- 신용카드 15% - 현금영수증·직불형 카드·선불카드 30% - 도서·공연비 30%(2018.7.1.이후 사용분부터 적용) -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 40%(각각 2012, 2013년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) -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30%(2019.7.1.이후 사용분부터 적용)
소득공제 한도	- 총급여 7천만원 이하: min(300만원, 총급여 20%) - 총급여 7천만원~1.2억원: 250만원 - 총급여 1.2억원 초과: 200만원 * '전통시장', '대중교통', '도서공연비· 박물관· 미술관 입장료' 사용분은 각 100만원 추가
일몰 기한	2022.12.31.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감면실적) 2020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.5조원임

- 2020년 실적은 2019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치임

[표 3]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, %)

	2014 실적	2015 실적	2016 실적	2017 실적	2018 실적	2019 실적	2020 실적
조세지출액	15,708 (14.5)	17,889 (13.9)	18,444 (3.1)	18,537 (0.5)	21,176 (14.2)	22,553 (6.5)	24,698 (9.5)

주: ()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□ (체육시설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인원) 2021년(2020년 귀속) 신용카드 등

사용금액 소득공제 인원 실적치에 재정패널조사의 급여구간별 근로소득
자 중 체육시설사용비를 지출한 인원 비중을 적용하여 대상인원 추정

-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인원 중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인원은 총급여
7,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119만 8,527명으로 추정

- 13차 재정패널조사 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체육활동비를 지출한 근로소득
자 비중을 구한 후, 이를 국세통계연보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인원
에 동 비중을 곱하여 체육시설사용분 소득공제 대상자 추계

[표 4] 2020년 귀속 기준 총급여구간별 체육시설사용분 지출 인원 추정

(단위: 명, %)

국세통계연보 인원		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체육시설사용분 지출 인원 추계			공제인원	
과세대상 총급여구간	신용카드 소득공제인원(A)	근로소득자 전체인원 추계 ¹⁾	체육활동비		비중(B)	A×B
			관측치 ²⁾	가중치 적용 전체 지출 인원 추계 ³⁾		
1천만 이하	0	1,343,598	39	89,116	6.6%	0
1~1.5천만원	2,106	763,200	36	82,261	10.8%	227
1.5~2천만원	123,034	763,200	42	95,971	12.6%	15,471
2~3천만원	1,487,143	2,499,823	141	322,189	12.9%	191,670
3~4천만원	1,418,299	1,743,478	148	338,184	19.4%	275,109
4~4.5천만원	688,759	701,504	62	141,672	20.2%	139,098
4.5~5천만원	634,394	904,872	74	169,092	18.7%	118,548
5~6천만원	1,042,156	1,336,743	140	319,904	23.9%	249,405
6~7천만원 ⁴⁾	682,847	866,026	116	265,063	30.6%	208,998
Total	6,078,738	10,922,396	798	1,823,454	16.7%	1,198,527

주: 1) 13차 재정패널조사 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
 2) 13차 재정패널조사 상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체육활동비 지출이 있는 자
 3) 13차 재정패널조사 상 근로소득자 중 체육활동비를 지출한 자에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
 4) 국세통계는 과세대상 총급여구간 6,000만원 초과 8,000만원 이하의 자료를 합산하여 제공하므로, 동 구간에서는 납세자가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여 7천만원 이하 구간의 통계자료 작성
 자료: 국세청, 「2021 국세통계연보」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「재정패널조사」 13차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가공제금액) 재정패널조사의 체육활동비 지출액과 가구원 수 정보를 활용하여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 1인당 금액 추계

- 동일 총급여구간에서는 체육시설사용분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추계한 결과이므로, 개인별 실제 사용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5] 2020년 귀속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 1인당 체육시설사용분 지출액 및 추가공제금액

과세대상 총급여구간	인원(명)	체육시설사용분 1인당 평균지출 ¹⁾ (A, 만원)	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액 (B=A×30%, 만원)
1천만 이하	39	50.7	15.2
1~1.5천만원	36	31.8	9.5
1.5~2천만원	42	38.7	11.6
2~3천만원	141	36.5	10.9
3~4천만원	148	39.1	11.7
4~4.5천만원	62	50.7	15.2
4.5~5천만원	74	28.1	8.4
5~6천만원	140	35.1	10.5
6~7천만원 ²⁾	116	32.0	9.6

주: 1) 13차 재정패널조사 상 1인당 체육시설사용분 지출금액의 총급여구간별 평균치
 2) 국세통계는 과세대상 총급여구간 6,000만원 초과 8,000만원 이하의 자료를 합산하여 제공하므로, 동 구간에 납세자가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하여 7천만원 이하 구간의 통계자료 작성
 1.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한 결과임
 자료: 국세청, 「2021 국세통계연보」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「재정패널조사」 13차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소득세 세수효과) 체육시설사용분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2021년 기준(2020년 귀속) 소득세수는 69억원 감소 예상

- 체육시설사용분 추가공제에 과세대상 총급여구간별 실효세율 적용한 후 공제 대상인원을 곱하여 총세수효과 산출
 - 실효세율은 구간별 현행 과세표준을 현행 결정세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
- 2021년 기준 총 세수효과에 NABO 연도별 명목민간소비증가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
[표 6] 2021년 총급여구간별 체육시설이용분 소득공제 추가에 따른 소득세 세수효과 추계

과세대상 총급여구간	공제인원 (A, 명)	1인당				총 세수효과 (F=A×D×E, 백만원)
		과세표준 ¹⁾ (B,백만원)	결정세액 ²⁾ (C,백만원)	실효세율 ³⁾ (D=C/B,%)	체육시설이용분 추가 공제액 ⁴⁾ (E,만원)	
1천만 이하	0	4.6	0.9	18.5%	15.2	0
1~1.5천만원	227	5.2	0.0	0.2%	9.5	0
1.5~2천만원	15,471	7.2	0.1	0.9%	11.6	16
2~3천만원	191,670	10.8	0.2	1.7%	10.9	353
3~4천만원	275,109	16.8	0.6	3.4%	11.7	1,107
4~4.5천만원	139,098	21.2	1.1	5.0%	15.2	1,062
4.5~5천만원	118,548	24.4	1.5	6.0%	8.4	598
5~6천만원	249,405	30	2.1	7.2%	10.5	1,894
6~7천만원	208,998	41	3.8	9.2%	9.6	1,844
합계	1,198,527					6,874

주: 1) 「2021 국세통계연보」 4-2-4, 직계비속 1인 추가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 금액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, 직계비속이 없을 시의 공제한도(100만원)보다 작아 과세표준의 변화는 없다 가정
 2) 「2021 국세통계연보」 4-2-4, 현행 결정세액을 대상 인원으로 나누어 구한 값
 3) 「2021 국세통계연보」 4-2-4, 현행 과세표준(B)를 결정세액(D)로 나눈 값
 4) 13차 재정패널조사 1인당 체육시설이용분 지출금액의 총급여구간별 평균치에 30%의 소득공제를 적용
 자료: 국세청, 「2021 국세통계연보」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「재정패널조사」 13차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 결과)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체육시설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에 따라, 소득세는 2024년 82억원 등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38억원(연평균 8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○ 동일 총급여구간에서 체육시설사용분이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추계한 결과이므로, 개인별 실제 사용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4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(안 제126조의2②)	-82	-85	-88	-91	-94	-438	-88

국회예산정책처	세제분석1과
과	장 박연서
추계세제분석관	문석희
연	02-6788-4669
락	slugnoid@nabo.go.kr
처	
